

o 분석

- 기업비밀보호와 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의 양자의 충돌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기업비밀보호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기업비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봄.
- DVD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CSS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DeCSS는 언론자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, 사익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봄.
- 그러나, 현재 DeCSS 프로그램이 이미 국제적으로 유포되어 기업비밀상태를 상실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임

참조기사

- CNet News, DVD-copying code loses free speech shield, August 25, 2003, available at [http://news.com.com/2100-1028\\_3-5067655.html?tag=fd\\_ledel\\_hed](http://news.com.com/2100-1028_3-5067655.html?tag=fd_ledel_hed)

## Spam 대응을 위한 공조의 움직임

o 주요 내용

- 세계 각국에서 그 피해가 증대되고 있는 스팸 메일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, 몇몇 영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10월경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.
- 이들은 미 하원에서 개최될 청문회에 참가하여 EU와 미국에서 스팸메일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,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.
-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메일 소통량 중 거의

60%정도가 스팸메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, 많은 양의 스팸메일이 미국 내에서 발송되고 있어서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- 벌금액수의 가중, 규제방식의 전환, 거부리스트 제도의 도입 등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방식에 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,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방식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음.
- EU의 경우 회원국은 Directive 2002/58/EC에 의해 2003년 10월까지 Opt-in방식을 자국법에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15개 회원국들이 자국법상에 Opt-in방식을 통한 규제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 회원국 모두 2003년 말까지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Opt-in방식의 채택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기는 하나, 연방차원이나 대부분의 주 입법들이 Opt-out방식을 채택하여 유럽에 비해 광고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영국의 관계자들은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규제방식상의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, 미국의 입법자들이 최근의 유럽내 입법동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강력한 스팸대응 법안을 채택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함.

## o 분석

-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상 스팸메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며, 또한 각 국가간에 규제방식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마케팅업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임.
- 개별국가들 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정도, 인터넷과 이메일의 사용정도, 스팸메일의 피해정도 등이 상이하기는 하나 규제의 필요성과 공조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우리의 경우도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,

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움직임 또한 일고 있는 가운데,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규제강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.

- 따라서 스팸문제가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참조 기사

- [1] washingtonpost.com, “UK Politician to Join Capitol Hill Spam Debate”, 2003. 9. 19.
- [2] washingtonpost.com, “Britain Cracks Down on Spammers with New Privacy Law”, 2003. 9. 18.